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6. 19. 관광건설위원회

1.	심사	경과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6월 5일
 - 회부일자 : 2006년 6월 5일
- □ 상정일자 :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6. 6. 15 :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국장 유 광 준)

- □ 제안 이유
 - 건축법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 임명 및 위촉 기준, 심의 등에 관한 기준 사항이 일부 개정 또는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 내용
 - 충청북도건축위원회 위원의 자격 기준 등을 정함(안 제4조 제3항)
 -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기하도록 해당분야 전문가를 1/4이상 참석하도록 함 (안 제4조제4항)
 -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

(관광건설전문위원 유인종)

- 본 조례의 개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위촉기준을 명확히 함은 물론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 요지 : 생 략
-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건축조례"를 "충청북도 건축 조례"라 한다.

제1조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시행령」"으로,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3.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하며,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에 부의안건"으로 , "위원에 게"

를 "각 위원에게" 로 하며,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심의)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와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한다.

- ②영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중앙건축위원회가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 ③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항 중 "3인 이상 7인 이내"를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11조 및 12조를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며, 제3항제3호중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19조 내지 제33조를 제20조 내지 제34조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과 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 및 선임된 것으로 본다.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법"이라 한다), "영"이라 한다) ' (이하 "시행규칙" 례로 정하도록 위	조례는 <u>건축법</u> (이하 <u>건축법시행령</u> (이하 및 <u>건축법시행규칙</u> 이라 한다)에서 조 임된 사항과 그 시 한 사항을 규정함		<u>「건축법」</u>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부한 사람 중 등 "도지사"라 한 위촉하는 자가 원인 위원은 전	은 <u>충청북도(이하</u>	에서 충청북도지다)가 임명 또는다만, 공무원을에는 그 수를 전이하로 한다. 1. 건축에 관한 풍부한 자 2. 건축 관련 학체나 기관의 추천 기관의 취단 기관의 참석하는 경우 해당 그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그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기이상이 되도한 때에는 해당한 때에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사(이하 "도지사"라 한 위촉하는 자가 된다.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체 위원 수의 4분의 1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한 공무원 자라 위원회의 심의를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하는 심의위원수의 4분 록 하며, 이 경우 필요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	<u>3년</u>	

관계법령 발췌

□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는 중앙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12.23, 1995.12.30, 1999.4.30, 2005.7.18, 2005.10.20>

-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 2.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②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임기등에 관한 사항,회의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등에 대한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5.7.18>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4.30, 개정 2006.5.8>
 - 1. 건축계획분야
 - 2. 건축구조분야
 - 3. 건축설비분야
 - 4. 건축방재분야
 - 5. 건축에너지분야
 - 6.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분야
 - <u>7. 조경분야</u>
 - <u>8.</u> 기타분야

- ④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5.7.18, 2005.10.20, 2006.5.8>
-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 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 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6.5.8>
 -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 3의2.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신설 2006.5.8>
-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 (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⑤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중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 미터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수 있다. <신설 1997.9.9, 1999.4.30, 2001.9.15, 2005.7.18>
-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18>

- ⑦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임기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위원 등에 대한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7.18>
- 1. 위원의 자격·임명·위촉 및 임기 기준 <개정 2006.5.8>
 - 가.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할 것
 - 나.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1이하로 할 것
 - 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06.5.8>
- <u>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할 것</u><신설 2006.5.8> 2. 심의에 관한 기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 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 다.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할 것.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
 - 마.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것

□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 제3조(수당) ①각종 위원회(사이버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 6. 11)
 - ②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으로 부터 미리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1)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지급 규정

- 제2조(출석수당) ①각종 위원회(사이버위원회 포함)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도 소속직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
 - 3. 위촉장 수여, 발표회 등 위원회 상정안건과 관련이 없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 ②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이 직접 자기소관 업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출석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 소속직원이 아닌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
 - 2. 충청북도사무전결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안자와 결재권 자의 직계 소속직원 이외의 공무원이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
 - 3. 도 소속직원이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경우